

石油事業基金 징수액 인하

●原油 10.26\$/B→9.47\$/B
 ●LPG 135\$/T로 불변

정부는

지난 해 11월의 국내原油도입 복합단 가가 배럴당 12달러 53센트로 집계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수입원유에 대한 석유사업기금 징수액을 배럴당 10달러 26센트에서 9달러 47센트로 79센트 인하하여 지난 12월 3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수입LPG(액화석유가스)에 부과되는 톤당 1백 35달러의 석유사업기금 징수액은 변동이 없다.

86년에 들어 정부는 국제원유가격 하락분으로 지난해 2월 20일과 3월 29일 두차례에 걸쳐 모두 22.8% (공장도 기준)의 국내油價 인하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그 이하의 하락분은 모두 석유사업기금과 原油관세로 흡수, 한때 기금징수액이 배럴당 15달러 56센트까지 이를 적도 있었으나, 지난 7, 8월을 고비로 국내原油도입 복합단자가 다시 상승함에 따라 기금징수액을 점차 축소조정, 지난 12월 3일부터는 배럴당 10달러 26센트씩 징수하여 왔다.

지난 해 8월 이후 국내原油도입단가가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은 지난 85년말 이후 산유국들이 경쟁적으로 취했던 산유량 확보정책으로 국제원유가격의 속락사태를 야기시킨 결과 OPEC(석유수출국기구) 내부의 강경·온건파 국가간의 가격중시정책에 대한 의견접근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12월 20일 폐막된 제80차 OPEC총회 (제네바)에서 금년 상반기의 OPEC 생산상한선을 지난 해 8월 5일의 1천 7백만B/D 합의보다 1백20만B/D나 감축된 1천 5백80만B/D로 합의하는 한편, 금년 1월 1일부터 7개 기준油種 바스켓 시스템에 의한 배럴당 18달러 固定油價制 실시에 합의한 것은 시행상의 몇 가지 잠재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제원유가격의 절진적인 상승의 조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3월 29일 국내油價 인하조정시 정한 방침에 따라 앞으로도 국제원유가격의 등락에 따른 원유 도입단가의 증감을 석유사업기금과 관세 징수액의 조정으로 계속 완충시켜 나갈 계획이다.

석유사업기금 징수액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석유사업기금 징수액 조정내역

1. 조정원칙

- 제80차 OPEC총회 결과가 국내도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를 1987년 2월 이후로 전제
- 원유도입단가 상승에 따른 油價인상요인을 전액 基

金감액으로 흡수

- 原油관세는 24.5%를 전제
- 국내油價는 협행수준을 계속 지속

2. 조정기준

- 原油도입단가: 12.53\$/B (86년 11월 내수도입실적 ·FOB)
- 환율: 867.0원 / \$ (86년 12월 22일 對고객 전신환매도율)
- 관세: 15→24.5% (87년 1월 1일 이후 시행 예정)
- 기타부대비용: 原油도입단가 상승에 따른 부대비·諸稅 등 상승분 반영)

5. 국제原油가격 추이(\$/B)

(단위: \$/B)

	1985年末	86. 2月末	3月末	5月末	8月末	10月末	12月24日
WTI	26.35	13.95	10.45	14.55	15.83	15.23	17.28
브렌트	26.40	17.50	10.30	13.60	14.43	14.53	17.18
국내평균導入價	26.65	23.45 (22.89)	(18.34)	(11.75)	(8.84)	(12.11)	(12.53)

註: ()는 국내油價 반영 FOB, 단(12.53\$/B)은 11월 도입단가

6. 1986. 1~10次 국내油價 조정내용

(1) 국내油價 조정내용

調整 日 時	調整 前	1 次 (2. 20)	2 次 (3. 29)	3 次 (5. 31)	4~7 次 (7. 4~10. 4)	8~9 次 (10. 31-12. 3)	10 次 (12. 31)
原油導入單價 (\$/B)	27.57	22.89	18.34	13.08	8.84	12.11	12.53
油價조정 (工場渡, %)	—	△ 12.93	△ 10.70	0	0	0	0
關稅징수(%)	1	5 (+4)	12 (+7)	15 (+3)	15 (-)	15 (-)	24.5 (+9.5)
基金징수(\$/B)	0.50	0.50 (-)	1.92 (+1.42)	9.04 (+7.12)	15.56 (+6.52)	10.26 (△5.30)	9.47 (△0.79)

註: 4~7次: 4次(7. 4), 5次(7. 29), 6次(9. 5), 7次(10. 4)

8~9次: 8次(10. 31), 9次(12. 3)

(2) 原油가격 하락분의 배분

	1 次 (2. 20)	2 次 (3. 29)	3 次 (5. 31)	4~7 次 (7. 4~10. 4)	8~9 次 (10. 31-12. 3)	10 次 (12. 31)	計
原油가격하락이익 (\$/B)	4.68 (100%)	4.55 (100%)	5.26 (100%)	4.24 (100%)	△3.27 (100%)	△0.42 (100%)	15.04 (100%)
油價인하(%)	83.3	55.7	—	—	—	—	38.4
關稅증액(%)	16.7	21.7	5.7	—	—	171.0	19.1
基金징수(%)	—	22.6	94.3	100	△100	△71.0	42.5

3. 조정요인

	변화 폭	Fund 조정소요
原油도입단가상승	+0.42\$/B (12.11→12.53)	△0.47\$/B
관세상승	+9.5 (15→24.5)	△1.36\$/B
부대비상승	+0.06\$/B (2.61→2.67)	△0.07\$/B
환율하락반영	21.9원/B (888.9→867.0)	+0.77\$/B
판매수익증가등		+0.34\$/B
基金징수액변동		△0.79\$/B (10.26→9.47)

4. 조치

- 1986년 12월 31일부터 수입原油의 석유사업기금을 아래와 같이 조정
- 10.26→9.47\$/B (△0.79\$/B)